집합·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1 적용 지역

○ 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(강화군·옹진군 제외), 경기도

2 적용 대상 등

▣ 아래 예방접종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방안(인센티브)은 거리두기 4단계 시 적용하지 않음

- 단,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사적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(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 포함 가능)하며,
-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대규모 스포츠대회의 경우,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

○(접종 완료자만 참석)
- 대규모 스포츠대회: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자*인 경우, 최소인원 참석으로 개최 가능

* 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유효

○ (사적 모임) 2021.7.1.부터 예방접종 완료자*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집합·모임·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

• 단, 집회의 경우,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

○ (직계가족) 2021.6.1.부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**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직계가족 모임 시 인원 산정에서 제외

* 예방접종 완료자=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** 예방접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

❶ 9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 포함)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

○ (조치내용) 아래 예외사항 외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, 9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, 동일한 장소(실내/실외)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·모임활동 금지

○ (금지대상) 동창회, 동호회, 야유회, 직장회식(중식 포함), 계모임, 집들이, 신년회, 돌잔치, 회갑·칠순연,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·행사

○ (인원산정) '9명의 범위'에는 **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, 종사자 등은 제외**

※ 적용 예외

○ **일상적인 가정생활**을 위하여 **가족구성원*** **등**이 모이는 경우
- **동거가족 모임**
  * 일시적으로 지방근무·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,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(예: 주말부부) 포함
- **아동(만 12세 이하), 노인, 장애인 등 돌봄**이 필요한 경우
- **임종 가능성**이 있어 **가족** 등이 모이는 경우

❷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

○ **동일 목적**을 가진 사람들이 **사전에 합의·약속·공지된 일정**에 따라 **동일한 장소**에 모여서 진행하는 **일시적인** 집합·모임·행사로서 아래 예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**금지**

- **단, 대규모 스포츠 대회에서 대회참가자 및 운영인력이 접종완료자 또는 PCR음성확인된 자*인 경우, 최소 인력 참가로 대회 개최 가능**

  * 경기 전 48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만 유효

< 금지 대상 모임·행사(예시) >

▲ **(모임·행사)** 결혼식, 장례식,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, 수련회, 집회, 페스티벌·각종 (지역)축제, 사인회, 강연, 훈련, 대회 등

※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은 각각 별첨 '기본방역수칙' 의 결혼식, 장례식, 종교시설,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공연장 수칙과 추가수칙을 적용

○ 지방자치단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 가능하며,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❸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

○ **법령 등에 근거**한 활동으로, **일정 인원 이상**이 **대면**으로 모여야 하며, 시한이 정해져 있어 **취소·연기가 불가한 경우** 등 행정·공공기관의 **공적 업무수행*** 및 **기업의 경영활동***에 **필수적**인 **모임·행사**는 인원 제한 없이 **허용****

* (예) 기업 정기 주주총회, 예산·법안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, 방송제작·송출 등

** 공무,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한 행사 금지(4단계)

❹ 시험의 경우, 수험생 간 1.5m 간격 좌석배치 등 방역수칙 준수하며 시행 가능(1~4단계)

3 적용 기간

○ 2021년 10월 18일(월) 0시 ~ 2021년 10월 31일(일) 24시

4 법적 근거

○ 「**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**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 제1항제2호 및 제80조제7호, 같은 조 제2의2호, 제2의4호 및 제83조 제2항 및 제4항

제49조(감염병의 예방 조치) 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,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,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. 흥행, 집회,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

2의2.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·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

2의4.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

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.

제80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7. 제47조(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49조제1항(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)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

제83조(과태료) 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·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2.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5 추진내용 및 절차 : 사적 모임

① **(중대본)**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방역지침 준수 조치**)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사적 모임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행정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(방역수칙 및 위반 시 과태료 등 안내)

⇩

③ **(지자체)** 방역지침 위반 시 참석자 및 시설 운영자·관리자에게 **과태료 부과** (감염병예방법 제83조) 및 필요시 해당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* 행정조치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)

* 집합금지 조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특정 사적모임(예 : 자전거 동호회 모임)에 한함

⇩

④ **(지자체) 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

* 다만,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바로 집합금지 조치도 가능하며, 운영중단 명령 시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행정처분의 기준)에 의거하여 운영중단, 시설폐쇄 명령이 가능함

※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10(개별기준)

위반사항	근거 법조문	행정처분 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9조 제3항				
가. 출입자 명단 작성,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나. 소독,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		운영중단 10일	운영중단 20일	운영중단 3개월	폐쇄명령

○ 적용대상(사적 모임 참석자 및 관리자·운영자)의 준수사항

< 사적 모임 >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9명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9명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9명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▸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9명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▸ 9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적용기간(10.18.~10.31.) 중 접종미완료자 4명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

<적용 예시>

사적모임 최대 8명(접종 미완료자 최대 4명) 가능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0명 ⇒ 4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4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3명+완료자 5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2명+완료자 6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1명+완료자 7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4명 ⇒ 8명(O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5명+완료자 3명 ⇒ 8명(X)
미접종 또는 1차 접종자 4명+완료자 5명 ⇒ 9명(X)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 여부 **현장점검** → 위반 시 **과태료 부과** 또는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→ **벌칙 부과** 등 조치

① 관내 **사적 모임 참석자에 대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항 안내 및 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, 완화금지 사항을 제외하고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.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② 해당 모임·행사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③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* 방역지침 준수사항 재고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가능함을 안내

-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개최하는 모임·행사에 대해서는 **지자체장**이 **과태료 부과** 또는 해당 사적모임에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실시

-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(벌금300만원)**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(구상권) 청구**

6 추진내용 및 절차: 사적 모임을 제외한 집합 · 모임 · 행사

① **(중대본) 집합·모임·행사 집합금지 조치**
(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)
※ 위 '대규모 스포츠대회'는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 시 개최 가능

⇩

② **(지자체)** 관내 **집합·모임·행사 금지 조치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, 준수 여부 현장점검** (위반 시 벌칙 등 안내)

⇩

③ (지자체) **집합금지 행정조치** 위반 시 **고발 조치**, 확진자 발생시 **손해배상 청구**

○ 적용대상 시설의 준수사항

☞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제49조제1항제2호)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**집합금지 조치**

- 위 기간 동안 **감염병 예방**을 위해 **관내 집합·모임·행사 금지**

○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

☞ **추가 행정조치** 및 **안내** → 이행여부 수시 **현장점검** → **위반 시 벌칙 부과** 등 조치

- 관내 **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** 및 **추가 행정조치** 실시

※ 다만,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,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,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

- 위반 시 벌칙,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, 담당자 정보 등 **안내**

- 이행 여부 등 **현장점검** 실시

-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**고발 조치**(벌금300만원 이하)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·치료비 및 방역비 **손해배상**(구상권) **청구**